

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 절차법」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3. 6. 27.

인천광역시 서구 아라동장



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1.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

-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

2. 관련근거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-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3. 공고방법 : 인천시 서구 아라동 홈페이지 (우리동 소식)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3. 6. 27. ~ 2023. 7. 18.(21일)
5. 설치장소 : 아라동 관내 일원 (무단투기 지역별 이동설치 예정)
6. 의견제출

○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3. 7. 18일까지
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붙임2)를 인천광역시 서구 아라동 행정복지
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방법: 방문·우편 또는 팩스(032-718-5519)

- 우편: 우)22865 인천광역시 서구 바리미로 23(원당동) 4층 민원실

라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: 인천광역시 서구 아라동 행정복지센터

(☎ 032-718-5505)